

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6. 19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5. 2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5. 23.

다. 상정일자: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6. 16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구민안전과장 한상진】

가. 제안이유

-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마포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
(안 제10조 제2항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0조
- 입법예고: 2025. 4. 17. ~ 5. 7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전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.

① 조례의 개정 취지

※ 위원회 구성 현황

구분	계	당연직	위촉직	비고
위원 수	9	6	3	

- 당연직 : 부구청장(위원장), 행정지원국장(부위원장), 구민안전과장, 예산정책과장, 복지정책과장, 도로개선과장
- 위촉직 :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② 주요 개정내용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 변경(안 제10조)

- 위원 수 확대(10명 → 15명)를 통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임.

구 분	기 존	변 경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	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	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○ 종합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수 확대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기금 운용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

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0조 (기금 운용심의위원회)
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(이하 생략)